

납부금 반환 규정

학교 법인 나가누마 스쿨 도쿄 일본어 학교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나가누마 스쿨 도쿄 일본어 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에서 학칙에 따라 학생이 납부하는 납부금의 처리 및 반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일본어 교육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본교가 시행하는 문부과학성 인정 일본어 교육 과정에 입학할 희망하는 학생 및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2. 온라인 코스 및 개인 레슨 등 문부 과학성 인정 대상 외 과정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납부금의 종류)

학생이 납부하는 납부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전형료
- (2) 입학금
- (3) 수업료
- (4) 시설 이용료
- (5) 교재비 등
- (6) 기타, 본교가 별도로 정한 비용

제4조 (납부의 원칙)

1. 납부금은 본교가 발행하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납부해야만 한다.
2. 납부금은 수업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한다.
3. 본교는 입학 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납부금을 일시불로 청구하지 않는다.

제5조 (입학 전의 입학 취소에 따른 환불)

1. 입학 신청 후부터 최초 학기 시작 전까지 입학을 취소한 경우 납부금 반환의 여부 및 범위는 본 규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납부금 반환 규정 별표」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6조 (입학 후 퇴학에 따른 반환)

1. 입학일 이후에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퇴학한 경우 해당 퇴학 시점에 이미 시작된 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 시설비 및 교재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퇴학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 시설비 및 교재비 등의 반환 여부와 범위는 본 규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납부금 반환 규정 별표」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3. 본조에 따른 반환은 교장의 퇴학 허가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7조 (징계 처분에 따른 퇴학 시의 처리)

1. 학칙에 근거한 징계 처분으로 퇴학한 경우는 해당 퇴학 시점에 이미 시작된 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 시설비 및 교재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해당 퇴학 시점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 시설비 및 교재비 등의 반환의 여부 및 범위는 본 규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납부금 반환 규정 별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불가항력의 사유에 관한 처리)

1. 감염병의 유행, 천재지변 등 본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업이 온라인 등 대체 수단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도 납부금의 반환이나 감액은 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경우에 학생이 퇴학할 경우 납부금의 처리는 제 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반환 방법 및 수수료)

1. 납부금의 반환을 희망하는 학생 중 본 규정 제 5조 또는 제 6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본교가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해야한다.
2. 납부금 반환은 납부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항의 반환에 따라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 해외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중계은행 수수료 외의 반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전부 납부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규정 언어)

본 규정은 일본어를 원문으로 하며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이 작성된 경우에도 해석은 일본어 원문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학교 법인 나가누마 스쿨 학납금 납부 및 환불 규정」 (2025년 7 월1일 개)으로 대체하여 2026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